

한국군 해외파병 관련 국내 기록의 현황과 기록관리 실태

Current State of Domestic Records and Record Management Related to Dispatch of ROK Armed Forces

유정아 (Jeong A Yoo)*

임진희 (Jin Hee Yim)**

초 록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하며, 간접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당대의 사건이라 하겠지만, 관련 기록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파병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생산되는 각종 기록들은 다양한 관련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개별 기록물들에 대한 검색이나 접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해외파병과 관련된 일련의 기록들을 컬렉션화하는 작업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들은 대부분 공적 프레임의 차원에서 작성된 기록물만을 이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상 아카이브 측면에서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의 현황을 파병절차, 관련 기관 및 파병부대별로 정리하고,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Dispatch of ROK Armed Forces is a significant contemporary event that enhances the ROK'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ensures the solid national security by contributing international peace keeping operations. Indirectly, dispatch of armed forces also can contribute to strengthen the national defense. However, despite its importance, record management related to the dispatch is not done properly. Because variable records produced in the process of dispatching troops are transferred to distributed archives, searching or accessing each record is not easy and making a collection from a series of record related to certain dispatch is more difficult. Moreover, since most transferred records were produced in the public domain,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record in the aspect of archive of everyday life is needed. In this paper, we summarize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records by dispatch procedure, organization, and dispatched troops. And we also explore the problem of record management.

키워드: 해외파병, 기록관리, 기록화전략

dispatch of armed forces, records management, documentation strategy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sjjayoo@gmail.com)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부교수(yimjhkr@mj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6년 8월 22일 ■ 최초심사일자: 2016년 9월 4일 ■ 게재확정일자: 2016년 9월 12일

■ 정보관리학회지, 33(3), 287-319, 2016.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3.287]

1. 들어가는 말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곽건홍은 자신의 저서 『한국 국가기록의 이론과 실제』에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¹⁾이 시행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곽건홍, 2003). 그리고 얼마 후 한 언론사에서는 ‘기록이 없는 나라’²⁾라는 제하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고발하는 탐사보도를 단행하면서, 참여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기록관리 실태를 개혁하는 특단의 조치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기관 내에 기록관리 전문가를 배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생산되는 기록들의 확실한 보존을 통해 역사를 되살리려는 노력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기록들의 상당수가 제대로 된 관리의 부재 속에서 의미나 가치가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그러한 기록들 중 하나가 바로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현재는 해외파병 관련 기록의 관리 체계가 상당부분 개선되어 전자시스템을 통한 생산, 이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청각 기록(동영상, 사진) 및 박물관류 등도 이관이 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기록이 관련 기관으로 이관되어 지고 난 이후에는 해당 기록에 대한 검색 및 열람 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았다. 기록의 소장기관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 관리됨으로써 기록들 간에 존재하는 맥락을 파악하거나 특정 기록물의 소재를 파악하고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파병부대에서 생산한 전자문서나 공문서철 외에 파병군인들이 파병지에서 수행했던 임무 성과나 경험들은 다음 파병 부대원들이 파병준비 간 참고할 수 있도록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前 PKO 센터)에서 귀국보고서 형태로만 작성되어 보존된다. 파병지에서의 활동상과 관련된 일반 기록물이나 사진 자료들은 정기 파병사 편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기록들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육군군사연구소로 이관되었으며, 중요하고 희귀한 기록물들은 전쟁기념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 즉 현재의 파병부대 기록 관리 체계는 하나의 파병부대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일련의 컬렉션 개념으로 묶어 수집, 이관 및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의 성격 및 활용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으로 이관·보존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파병부대에 대한 기록을 하나의 기관을 통해 열람하고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록관리 체계상의 한계는 해외파병 업무수행 절차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유엔의 PKO 참여요청은 외교부를 통해 이뤄지고, 참여여부 검토 및 결정과정에서는 국방부도 동참한다. 해외파병 참여가

1) [법률 제5709호 1999.1.29. 제정],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관리법’), ([법률 제8025호, 2006.10.4. 전부개정])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기록이 없는 나라’ 국가기록이 사라졌다」 『세계일보』, 2004.5.30일자 보도. 세계일보의 ‘기록이 없는 나라’ 탐사보도는 기록관리 혁신,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에 큰 계기 중 하나였다.

확정되고 나면 국방부가 업무수행을 전담하며, 부대가 파견된 현장에서는 합참이 총괄하는 다원화된 업무형태로 해외파병이 추진되다 보니 관련 기록 역시도 업무수행 주관기관의 기록관리 담당기관으로 분산되어 이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제 해외파병은 “한 나라의 안보자산이 단순히 자국의 국가방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시대(국방대학교, 2012)” 그리고 통일 이후를 대비해 대한민국의 외교 및 안보역량 확대해 나가야만 하는 입장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당대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록들 역시도 국가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확실하다. 그러나 해외파병 업무수행절차상의 구조적 문제나 수집 이후 기록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의 한계로 인해 현황 파악도 쉽지 않으며, 연구 측면에서의 활용 역시도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과 결부되어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해외파병의 실상에 대해 기록화가 잘 되어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991년도 유엔가입 후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의 현황과 실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해외파병 진행 과정에서 생산해야만 하는 기록물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해외파병 단계와 각 단계별 업무수행 기관들을 파악하고, 이어서 각 기관별로 생산 및 관리하고 있는 기록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정리한다. 정리된 기관별 기록 소장 현황을 바탕으로 특정 파병부대를 사례로 최초 단계에서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산된 일련의

단편 기록들을 컬렉션화를 수행함으로써 해외파병 기록들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해외파병 관련 기록물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한계는 관련분야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전 파병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해외파병들에 대한 기록물의 생산이나 이관현황, 기록물 관리실태의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문헌조사 결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일부 진행된 연구들은 해외파병으로 인한 외교관계의 변화나 파병정책 결정 요인 분석, 혹은 파병장병들의 인성 및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 대한 연구로 국한되어 있었다. 해외파병이 가지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후대에 기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으로 관리되어야만 하는지, 해외파병과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기록화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다루는 선행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일부 연구들은 베트남전 파병의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료의 부재로 미국 측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해외파병 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해 안정애(2014)는 베트남전 파병과 연관된 청와대, 국방부, 주월한국군사령부, 외무부 등의 정부기관 및 입법과 심의 주체인 국회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보존중인 베트남전 파병과 관련된 기록물을 파악하고, 역사적

인 재평가를 위해 이러한 기록물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해외파병부대 기록물의 바람직한 활용 측면에서 해외파병부대 기록물의 활용 가치를 분석하고 접근방안을 모색하면서, 육군의 해외파병부대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도 있었다(오재환, 2011).

해외파병과 관련된 외교정책의 변화 및 파병정책 결정과정을 다룬 최근의 연구로는 학위논문 연구 차원에서 진행된 김정두(2011), 이병록(2015), 방경중(2016), 이상욱(2016)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해외파병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부분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여 파병정책결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파병 관련 국내기록의 부재를 지적한 연구로 장준갑(2009)은 존슨 행정부와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벌인 외교적 과정을 분석하면서 국내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미국측의 자료에만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태균(2006) 역시 베트남전 파병과 관련해 한·미간의 협상 과정을 분석하면서 정작 중요한 국내 문서들은 공개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정애(2014)는 베트남전 파병과 관련된 국내 자료 현황을 정리하면서 국방부에서 보관 중인 8권의 영인본 외에는 파병 당시의 1차 문서를 발견할 수 없어 대부분 파기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리고 간혹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는 해당부서의 생산문서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

고 지적한 바 있다.

해외파병을 경험한 장병들의 인성 관리 측면에서 정효현(2003)은 해외파병 경험 장병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 및 조직 효과성이 어떻게 달리 표출되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명분이 없다고 인식하는 병사들이 파병에 명분이 있다고 인식하는 병사들에 비해, 스트레스의 심리적 반응, 행동적 반응, 조직적 반응, 직무만족, 조직 몰입 면에서 조직에 역기능적인 유의차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파병장병 선발 시 가치관과 의식을 우선 고려하고, 파병 전 후로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할 것과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정훈장교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군의 파견명분 인식과 스트레스 반응과의 상관성연구(정효현, 2003b)에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명분이 없다'고 인식하는 장병들이 '파병에 명분이 있다'고 인식하는 장병들에 비해 스트레스의 심리적 반응과 조직적 반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정훈장교를 해외파병부대에 편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태근(2010)은 해외파병장병의 전장 및 직무 스트레스요인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요인 분석을 통해 해외파병장병들이 임무현장에서 다양한 전장 및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은 임무수행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해외파병 기록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특수성을 가질 수 있는 군 기록의

관리방안을 제안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김소영(2008)은 육군군사연구소의 역사기록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수집형 역사기록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방안으로서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 기록물관리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역사기록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집 및 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2. 해외파병의 개념과 절차

2.1 해외파병의 개념과 현황

『국군의 해외파병업무규정』 제2조³⁾에서는 해외파병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다국적 평화활동 및 해외재난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부대 및 개인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해외파병은 자국의 군대를 군사적 혹은 정치적 협력 등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해외파병의 법적근거⁴⁾는 우선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⁵⁾에서도 한국과 미국 중 어느 일

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해서, 단독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조약의 실행과 조치를 협의하에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외에도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법률』⁶⁾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해외파병은 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계인 이정기의 손자로 산둥반도에 진출해 독립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사도가 819년 반란을 일으키자 당나라는 신라에 3만 명의 파병을 요청하였고, 신라 현덕왕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최초의 해외파병이 이루어졌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1274년과 1281년 몽골군이 대군을 이끌고 일본 원정에 나섰을 때 전투병 1,800명과 지원인력 21,700명, 전함 1,800척을 파견했다(월간 논 편집부, 2007). 조선시대에도 크고 작은 해외파병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1964년 베트남 전쟁

- 3) 국방부훈령 제811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규정』에서는 외국에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 주둔하면서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와 함정의 근무요원들도 포함하고 있다.
- 4)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0조 2항에서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해외파병 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파병의 정당화 논리는 많은 공격을 받아왔다. 특히 이라크전에 대한 파병이 거론될 당시 과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오히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무력공격을 가하면서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었다.
- 6) 『법률제13123호, 2015.2.3, 일부개정』 제1조 이 법의 목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때 의료진과 대권도 교관으로 구성된 비둘기 부대를 시작으로 1973년까지 8년 6개월 동안 32만 명의 인원이 파병되었다. 그리고 1991년 UN 가입 이후의 해외파병은 1999년 동티모르에 400여 명 규모의 전투병이 파병되어 대민구호활동과 치안유지 활동을 펼쳤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UN 평화유지군과 국방협력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총 27개국에 47,250명이 파병되었으며, 현재 파병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2016년 6월 17일 기준으로 총 13개국에 1,118명이다.⁷⁾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수행된 해외파병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으로서, 1993년 소말리아에 최초 상륙수 부대를 파병한 것을 시작으로 서부사하라 국군 의료지원단, 앙골라 공병부대,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등이 파병되어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가 UN PKO로서의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 부대단위가 아닌 개인으로서 정전 감시 요원이나 협조장교로 활약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으로, 다국적군이나 동맹군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의미한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해성·청마·동의·다산·오쉬노부대가 파병되었으며, 이라크에는 서희·제마·자이툰·다이만부대가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하였고, 현재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청해부대가 활동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국방협력활동’으로서, 우리나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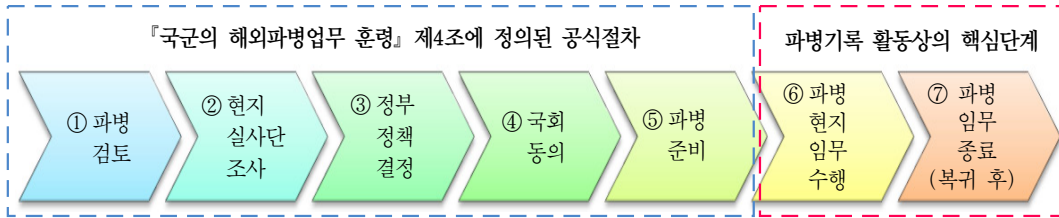
파병 대상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임무수행중인 필리핀의 아라우부대와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를 예로 들 수 있다.

2.2 해외파병 절차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739호』(2014. 12.16.)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국군의 공식적인 해외파병 절차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계별 임무수행과 관련한 절차만 명시하고 있을 뿐 기록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5조 각관의 임무에서는 “각군 참모총장은 파병관련 자료 정리 및 존안을, 파병부대장은 파병 중 복귀 후 역사자료 및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자료 등을 획득하여 전쟁기념사업회에 전달하며, 국방대학교총장(국제평화활동센터)은 파병부대의 파병성과·교훈집 및 파병요원의 귀국보고서 작성 감독·배포·관리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파병추진 단계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파병과 관련된 공적인 활동에 대한 책임설명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록이며, 6단계에서 현지 파병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생산하는 기록 또한 국내 파병추진기관에서 생산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실제 활동상을 조명할 수 매우 의미있는 기록이다. 7단계 복귀 이후 진행되는 기록물 이관 및 보존되는 단계인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6·7단계는 파병기록 관리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추

7) http://www.ebook.mnd.go.kr/합동참모본부_해외파병부대활동(검색일: '16. 8. 1)



〈그림 1〉 한국군 해외파병업무 수행 절차

가적인 검토를 통해 기록관리 측면을 보강하였다. 6단계의 파병 현지부대에서 반드시 생산되어야 할 기록은 각 군 본부(육군본부⁸⁾)의 기록관리 규정⁹⁾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외파병부대 기록관리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고, 7단계는 파병복귀 후 파병부대에서 생산된 실제 기록을 이관함은 물론, 국제평화지원센터 주관의 귀국 보고서 작성과 파병성과 교훈집 발간, 군사편찬소 및 군사연구소의 파병사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 조사를 통해서 이미 생산되어진 기록의 보존 외에도 추가 연구를 통한 생산·보존되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시스템을 언급하였다.

해외파병업무 수행절차는 유엔이 특정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사태 발생으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하고자 할 때에는 ① 유엔 사무총장이 분쟁 현장에 특별조사단을 파견, ② 특별조사단 보고를 기초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의 구체적인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 ③ 유엔 안보리가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승인하고 결의를 채택하는 절차를 취한다. 이 과정에서 분쟁지역에 대한 PKO 운용 방침이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유엔은 임무수행에 적합한 국가를

대상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파병 가능 여부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하게 되는데 각국의 PKO 참여 검토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유엔으로부터 비공식 의사 타진을 접수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파병 단계별 업무내용, 관련 부서 및 생산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인 ‘파병 검토’ 단계와 관련된 부서는 대통령의 핵심 보좌기구로서 해외파병 지역·규모·시기와 임무 형태, 안전대책 및 국제관계나 부대 운용에 있어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관련 정부 기관과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방향을 최종 조정·통제하는 대통령 비서실과 실무추진 부서인 외교부와 국방부를 들 수 있다. 유엔으로부터 외교부에 서한이 접수되면 외교부는 이에 대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이하 합참)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국방부는 임무수행 형태에 따른 부대 가용성, 국익과의 관계, 현지 위험도,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며, 그 결과 파병이 UN PKO일 경우에는 외교부가 업무를 주관하며, 다국적군일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주관한다. 각 주관부서에는 파병 검토관련 문서들을 생산하게 된다. 이후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해당 문

8) 파병부대의 95% 이상이 육군으로 편성된 부대로 육군본부를 예로 함.
9) 『육군 기록물관리 규정 153』, 9장 해외파병, 해체 및 개편부대 기록물관리, 2014.

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실무회의자료가 작성된다.

두 번째 단계인 '현지실사단 조사'는 파병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서, 조사단 편성은 정부·군·정계·학계 등의 인원으로 구성¹⁰⁾되며, 조사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조사단은 현지의 정치·외교·군사·지리·문화·종교뿐만 아니라, 특히 파병에 대한 당사국의 수용 의지와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파병 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파병 부대의 효용성, 파병 규모, 임무수행 여건(위협도·안전성, 기후, 지속적인 군수 지원 가능성)에 관해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실사단 구성이나 파견계획, 조사결과 등과 관련된 문서들이 생산된다.

세 번째 단계인 '정부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현지 조사 결과를 기초로 관계 기관 간의 토의와 검토를 거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또는 안보관계 장관회의) - 차관회의 의결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결재 순으로 진행되는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파병 참여 의사를 유엔에 통보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또는 안보 관계 장관 회의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여러 차례 개최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각종 회의의 회의록, 파병안 제안 설명서와 더불어 파병 개요, 관련부처 합의 내용, 예산조치 등을 포함하는 '정부 파병안(파병 동의안)'이 작성된다.

네 번째 단계인 '국회동의' 단계에서는 '정부

정책 결정' 단계에서 작성된 '정부 파병안'이 국회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된 이후 파병 부대의 성격에 맞춰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UN PKO는 외교통상위원회, 다국적군은 국방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임위 전체회의가 진행된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은 파병과 관련된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한다. 이어서 의원질의와 정부답변이 진행되며, 최종적으로는 참여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된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항이 포함된 예상질의/답변서, 파병관련 기본계획서, 제안설명서, 의원배포용 설명서(필요시) 등의 문서가 생산된다. 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면 국방위원회 대표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이어서 찬반토론이 실시된 후 표결에 붙여 과반수이상 찬성시 파병 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국회의 동의를 이루어지면 파병 기간, 규모, 임무, 지휘관계, 부대위치, 예산소요 등을 포함하는 '파병 기본계획(국회동의안)'이 작성된다. 이 경우 군감시단 요원이나 PKF 사령부 참모요원, 연락장교는 개별자격 참여로 간주하므로 국회 동의를 불필요하다.

다섯 번째 단계인 '파병준비' 단계에서는 합참과 각 군 본부, 파병 모체부대가 관여한다. 일반적으로 UN PKO 참여에 대한 정책 결정과 법적 조치가 완료되면 국방부 지령하달을 시작으로 파병준비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

10) UN PKO 파병의 경우, 외교부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여 외교부,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상비부대 등 관계자로 정부합동실사단으로 편성하며 복귀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다. UN PKO 이외(다국적군, 국방협력) 파병의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장성급을 단장으로 하며 이하 내용은 위와 같음.(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1739호)

부 정책 결정 이후 국회 동의를 이루어질 때까지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정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서부터 파병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국회 동의를 예상되나 절차상 국회를 얻는 데 시일이 지체됨으로 인해 자칫 유엔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파병을 못함으로써 국가 위상 실추와 실질적인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파병 준비 단계에서는 부대 편성, 교육훈련, 행정·군수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또한 현지 협조단을 파견해 책임지역·지휘관계·부대 운용·경비보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의 경우처럼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절차도 이와 유사하며, 최근 국내에서는 파병 절차 간소화, 유엔 상비체제 유지 등 국제사회의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단계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유엔과의 MOU 체결서, 파병지령, 부대예규, 교전규칙, 파병준비계획, 파병인원 선발계획 등이 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임무, 주둔지 위치, 교전규칙, 전투근무지원사항 등을 사전에 협조해야 할 경우에는 합참 작전본부장의 건의에 의거 합참의장의 최종 결정으로 현지 협조단이나 협조장교를 미리 파견할 수도 있다. 육군이 모체부대로 파견되는 경우에 육군 본부는 장비 및 물자 등을 구비하고 모체부대를 창설하며, 국제평화활동센터는 창설된 모체부대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후 선발대 및 본대 이동이 진행되면서 환송행사와 각종 홍보행사가 실시된다.

여섯 번째로 실질적인 파병 임무가 수행되는

‘파병 현지임무 수행’ 단계에서는 파병 모체부대를 선발대와 본대로 구분하여 임무 수행지역으로 전개하여 본격적인 파병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무는 부대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병지원, 의료지원, 민사작전, 경호임무, 교류활동, 임무교대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파병부대가 임무수행과 관련해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민사작전 수행 간에는 민사작전 수행 계획 및 결과, 현지인과의 교류 활동 사항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만 하며, 동일지역에서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과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들도 기록으로 남겨야만 한다. 공병지원 및 의료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계획이나 모든 활동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겨야만 하며, 기본적인 부대활동 수행 간에도 장병들의 사기복지 및 부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들이 시정각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으로 남겨져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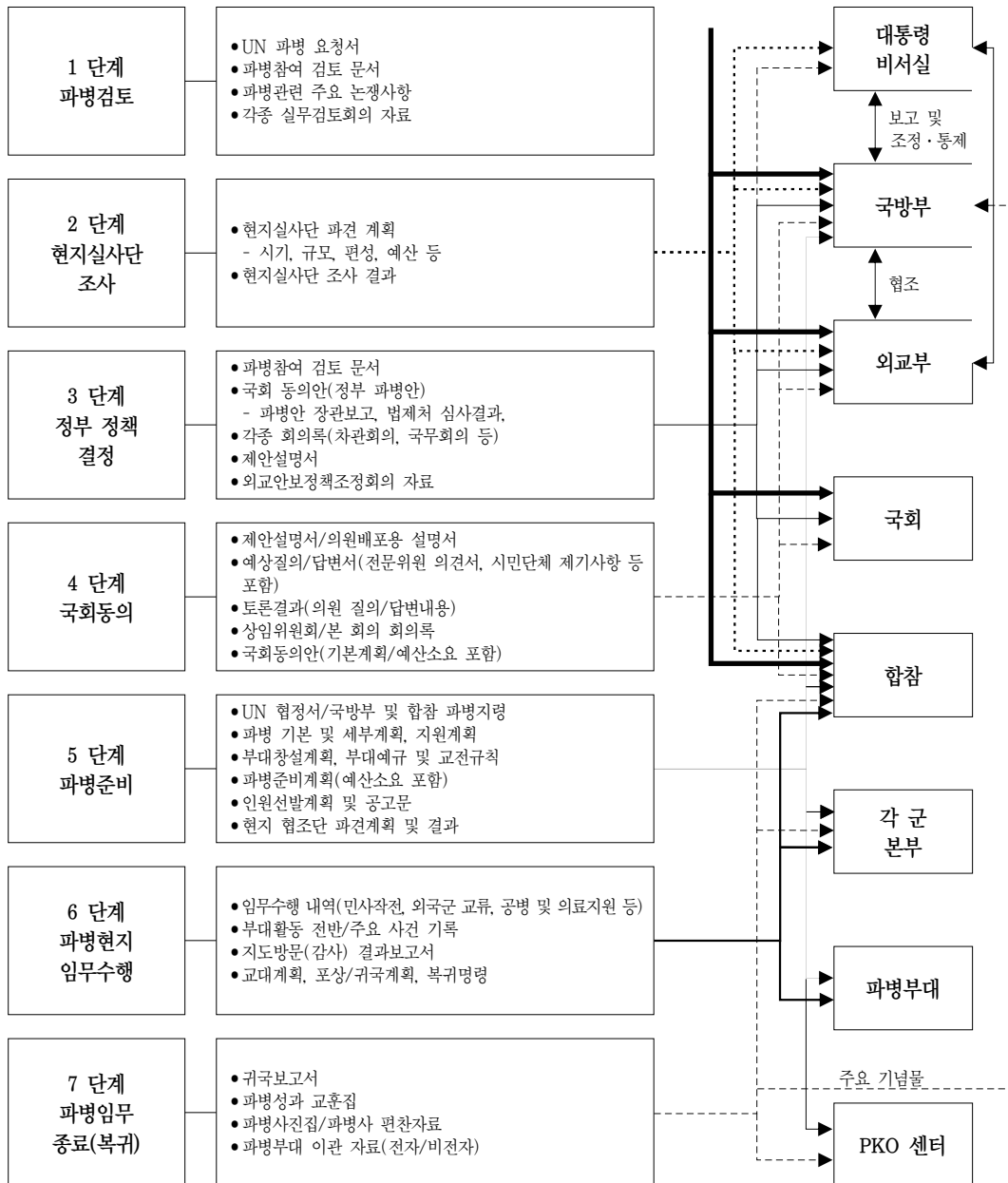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파병임무가 종료되고 국내로 복귀한 이후’에는 파병부대 주요 직위자들이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주관으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는 귀국보고서와 파병성과 교훈집을 발간하여 자료를 존안한다. 또한 파병부대에서는 파병기록에 대한 이관을 각 군 본부에 실시한다(단 합동군은 합참 기록관실로 이관). 국방부 군사편찬소 및 육군 군사연구소에서는 파병사 편찬 연구 및 파병부대 사진집을 발간하여 홍보하기도 하며, 역사자료,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 등의 주요 기록들은 이 후 전쟁기념관¹⁾과 기록정보관리단(해외파병 전시실)에 전시한다.

11) 파병 중 또는 복귀 후 역사자료,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 등을 획득하여 전쟁기념사업회에 전달하면,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기념관을 통해 관련 기록들을 보존·전시하고 있다.

2.3 파병단계별 기록물 소재 파악

<그림 2>는 2.2절에서 살펴본 해외파병 단계

를 토대로 각 단계별 생산되어야 할 기록과 주체기관의 예비 소장처를 보여준다. 물론 해외 파병 임무의 수행 주체는 파병부대이지만, 『국



<그림 2> 해외파병 단계별 수행주체와 주요 생산 기록

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조에 명시된 공식 절차 즉 해외파병과 관련해 국내에서의 파병절차 추진기관의 핵심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청와대),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병관련 공적활동의 수행 주체인 이들 4개 기관과 실제 파병부대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그림 2>에 나타난 파병 단계별 주체기관들의 소장 기록 현황은 3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첫째, 대통령 비서실은 1단계부터 3단계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로 관여하며, 6단계에서도 파병부대 현지 위문이나 주요 사건·사고 관련 최초보고 등으로 인해 일부 관여하고 있다. 파병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생산되어야 할 기록들은 파병 참여여부 검토, 주요논쟁 등 정책과 관련된 기록들이 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된다.

둘째, 외교부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파병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의 과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파병업무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가 반드시 생산 및 보존해야 할 기록들은 최초 정부정책 결정 전 파병검토와 현지조사단파견, 정부의 UN PKO 파병시 국회에 제출할 국회동의안(정부 파병안) 등이 외교부 사료관에 소장된다.

셋째 국방부와 합참은 전 단계에 걸쳐서 관여하고 있으며, 해외 파병에 관한 국방부의 부서별 업무는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 제1739호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파병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생산하는 주요 기록물은 1단계 최초 정부정책 결정전 파병검토와 2단계 현지조사단 파견

계획 및 조사 결과, 3단계 정부 정책 결정을 위한 검토의견 및 정부 파병안, 4단계 국회동의안 관련, 5단계 파병준비 간 지원계획, 6단계 현지 파병부대에서의 주요사건 또는 중요안전에 대한 보고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주로 국방부는 국방부 기록관, 합참은 합참 기록관에 보존한다. 합참은 자체 생산한 기록 외에도 파병부대가 단일군을 제외한 국군편성(육, 해, 공군)부대일 경우에 생산기록 일체를 합참 기록관실로 이관하도록 해외파병 훈령(1739호)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산하 기관인 군사편찬소와 육군군사연구소에서도 파병사 편찬 연구와 관련 일부 기록들을 자체 소장하고 있다.

각 군 본부 역시 5단계 파병준비에서부터 파병부대 구성, 부대예규 및 교전수칙 작성, 전투근무지원 등의 실질적인 파병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기록을 생산하며 각 군 자체 특수기록관(육군 기록정보관리단)에 보존한다. 또한 7단계 파병임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각 군 본부가 파병부대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물들을 이관받아 보존한다.¹²⁾

넷째, 국회는 4단계 국회동의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군의 해외 파병 시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기에 그동안 진행된 모든 파병에 대한 동의안은 국회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섯째, 해외 파병부대는 파병임무가 종료되고 복귀한 이후 파병임무 수행 간 생산했던 기록들을 각 군 본부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며, 희소가치가 있는 기록물은 전쟁기념관으로 이관한다.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작

12) 『국군의 해외파병업무훈령』 제1739(2014.12.16.) 제5조 (업무분장)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로 '파병관련 자료 정리 및 존안'을 명시하고 있다.

성된 귀국보고서는 센터 자체 활용을 위한 보존용과 국방부 기록관으로 동시 보존된다. 파병부대에서 제출한 문서들과 귀국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파병성과 교훈집 역시 국제평화활동센터 주관으로 작성되어 귀국보고서와 동일하게 보존된다.

3. 해외파병 관련 기관별 소장기록 현황

해외파병과 관련하여 유관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에 대한 현황 조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0개월간 국방부 등 10개 기관에 대해 현장방문¹³⁾을 통한 담당자와의 면담, 유선통화, 홈페이지 검색 등을 통하여 현황 및 목록을 조사하였다.

대통령기록관, 외교부, 국회 전자도서관은 시스템을 통한 검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나, 파병기록의 총 현황파악은 담당자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국회기록보존소 또한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회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일자를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접근은 쉬웠으나, 키워드 검색이 제한되어 정확한 일자를 모른다면 전체회의록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기록관,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은 파병 프로세스별 각 기관에서 직접 생산한 전자기록의 경우 온나라시스템을 통한 목록검색이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통한 전체현황 파악은 불가능하다. 또한 목록조사에서 파병 프로세스별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 외에 합동참모본부의 경우는 합동군으로 편성된 파병부대의 기록을 이관받도록 되어있고,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의 경우에도 기관에서 직접 생산한 기록 외에 육군부대로 편성된 파병부대의 기록을 이관받도록 파병훈령에 명시되어있어 파병부대에서 직접 생산하여 이관한 기록에 대한 조사는 현장방문을 통하지 않으면 세부 목록은 물론 전체현황 파악도 불가능했다.

특히 해외파병부대의 대부분은 육군부대 위주로 편성되다보니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은 실제 활동한 파병부대와 관련된 기록의 상당부분을 직접 소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파병과 관련한 기록의 관리는 2008년 자이툰부대 기록물 수집을 계기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집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을 뿐, 현재까지도 해외파병 관련 기록의 목록 및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자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때문에 여러 차례 직접방문을 통하여 어렵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해군·공군본부의 역사기록관리단 또한 검색이 제한되어 수차례의 직접 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기타 국방대학교 국제평화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검색과 담당자 유선통화로 현황 파악이 가능하였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상징적인 기록을 전시·관람하는 전쟁기념관은 홈페이지 검색이 불가하여 방문협조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해외파병과 관련한 기록은 다기관에 분산되어있고, 기관방문 조사 시에도 기관별 파병 건에 대한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13) 대통령기록관, 국회기록보존소,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본부, 군사편찬소, 국제평화지원센터, 전쟁기념관

한 번에 현황을 집계하기가 매우 제한되었으며, 목록은 비공개가 많아서 더더욱 획득하기가 어려웠음을 밝혀둔다.

3.1 대통령 기록관¹⁴⁾

최고의 국정수행 결과물이라는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제 7조¹⁵⁾에 의해 보좌기관인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자문기관, 인수기관 등의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을 이관받는다. 따라서 해외파병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 이후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확인 결과 직속기관(비서실 등 12개

기관)에서 생산하여 보존중인 기록물은 58,550건, 자문기관(국가안전보장자문회의 등 17개 기관)에서 생산하여 보존중인 기록물은 40,076건이었다. 모든 기록이 전자문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진이나 녹취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¹⁶⁾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한 해외파병 관련 보존 기록의 사례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에서 예로 든 보존 기록물 중 이라크 파병에 대해 국가안보 보좌관이 국정브리핑을 실시하는 모습을 남긴 사진 기록의 경우, 당시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가 심했었고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야 할 만큼 중대 사안이었다는 것을

<표 1> 대통령 기록관 파병기록 사례

영역	기록명	내용	기록유형	출처
파병 검토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참여문제 검토('05)	레바논 동명부대의 최초 파병 전 검토내용	문서	비서실
	해외파병부대 파견기간 연장 검토('05)	자이툰부대 연장관련 검토 보고		
	이라크파병에 대해 브리핑하는 국가안보 보좌관('05)	이라크 파병에 대해 브리핑하는 국가안보 보좌관	사진	홍보실
주요 사건 보고	아프간 자살폭탄테러 관련 최초 상황보고('05)	아프간 폭탄테러로 희생된 고 윤하사와 관련된 최초 상황보고	문서	비서실
	자이툰부대 총기사망사고 최초보고('05)	자이툰부대 총기사망사고와 관련된 최초 보고 내용		
파병간	이라크 레바논지역 현지 지도방문 계획('05)	지도/위문방문	문서	비서실
	이 대통령, 첫 해외파병부대 방문('11.11.3)	UAE 이크부대에 대한 대통령 부대방문 결과	문서	비서실
	해외파병 장병 가족초청 오찬 시 노무현 대통령 연설 내용	해외파병 장병 가족초청 오찬 시 노무현 대통령 연설 내용	녹취록	홍보실

14) 대통령기록관은 2009년 1월에 제정되어 7월31일에 시행된 대통령기록관리법에 의해 대통령기록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보존기록관이다.
 15) 대통령 기록을 생산하는 모든 기관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며,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은 대통령 기록을 철저히 수집·관리하고, 충분히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 <http://www.pa.go.kr/> (검색일: 2016.8.2)

집약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빗발치는 반대와 촛불시위 등의 뜨거운 논쟁 등과 관련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다.

3.2 외교부 사료관¹⁷⁾

외교부 기록관리담당부서에 확인 결과 해외 파병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문 및 참고보고 등의 종이기록물로 구성된 문서철 123권이 외교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체 외교부 사료관에 보존되고 있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한 해외파병 관련 보존 기록의 사례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UN PKO인 서부사하라 의료 부대에 관한 파견동의안 기록을 살펴보면, 유엔국의 회원으로서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다는 파견목적과 국회동의까지의 ‘정부 정책 결정’ 추진 과정, 부대편성, 소요예산, 군수지원 등을 포함하는 파병 기본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유엔사무총장의 파견요청(’94.2)을 접수하여 관계부처의 회의, 정부합동(외교부, 국방부)실무조사 파견,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국회동의안 확정(’94.5)까지 약 3개월간의 정부추진 과정을 거친 후 본대 파병(’94.9월)이 되기까지 7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UN PKO 아이티 단비부대 파병 사례¹⁸⁾를 보면 약 1개월 만에 파병이 되기도 하는 등 자칫 파병시기를 놓쳐 국제 사회의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추세에 맞는 신속한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외교부 사료관 파병기록 사례

영역	기록명	내용	기록유형	출처
UN파병요청	안보리결의(2132호)	남수단 파병관련 안보리 결의내용	문서	국제기구국
현지조사단 파견	유엔 PKO 파견 국군부대에 대한 성과평가단 파견(13-931)(’13.12.25)	남수단 임무단/레바논 평화유지군에 대한 활동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성과평가단이 2013.7.29(월)-8.5(월)간 유엔본부, 남수단, 레바논을 방문한 결과 보고	문서	국제기구국
동의안제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파견동의안(’06.12.4)	레바논 사태 안정화, 중동지역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	문서	유엔과
	한국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 평화유지단’ 파견동의안 의안원문(’94)	요청(94.2월), 확정(94.5월), 파병(94.9월)	문서	유엔과

17) ‘공공기록관리법’ 제 14조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수기록관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당해 공공기관 기록의 수집·관리 및 활용,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 이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그 밖에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부의 경우 육군본부의 기록정보관리단, 해군본부의 역사기록관리단, 공군본부의 역사기록관리단이 여기에 해당된다.

18) 파병요청(11.20), 정부결정(안보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11.26), 국회동의(12월 초), 파견(12월 중순)

3.3 국방부 기록관¹⁹⁾ 등 산하기관

국방부는 ‘공공기록관리법’ 제14조 안보분야 관련 기록을 생산하는 특수기관에 해당하며, 각 군 본부에도 특수기록물관리기관²⁰⁾을 운영하고 있고, 국방부내 자체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 기록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보존 중인 파병관련 기록은 전자문서 49,269건, 종이 기록물 24,089건, 파병 교훈집을 포함한 간행물 142권 등이었다. 파병 추진 단계별로 국방부에서 생산하였거나 파병부대에서 생산하여 보고한 보고서 등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의 예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파병동의안, 국회사정, 안보리 결의 등 정부추진과 관련된 다

양한 기록들과 각 분야별 파병지원과 관련된 기록들이 전자문서로 생산되어 보존되고 있다. 그 중 『아프간 다산·동의부대 철군 촉구안에 대한 국방부 검토 의견』을 통해서 당시의 파병 철군에 대한 국내여론과 아프간의 정세, 그리고 핵심 사건으로 부각되었던 피랍사건과 테러 사건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할 것으로 짐작했지만, 비공개 문서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사회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김선일씨 피랍과 관련하여 아프간 주둔 다산동의 부대의 철군을 촉구하는 시위가 활발했음을 민간영역(신문기사, 인터넷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영역의 기록에서는 정부추진과 반대되거나 마찰되는 쟁점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표 3> 국방부 기록관 파병기록 사례

영역	기록명	내용	기록유형	출처
정부 정책 결정	국군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서희·제마부대 철군 결의안 검토 보고서 검토결과('04.8.30)	이라크 자이툰부대 추가 파병 중단과 서희·제마 부대의 철군 결의안 내용	문서	정책조정담당관
	국무회의록(16회~23회)	한국 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 평화유지단 파견안(23회)	문서	총무처
	아프가니스탄 파견 국군부대 철군 촉구안 국방부 검토 의견 제출('11.7.21)	아프간 다산·동의부대 철군 촉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	문서 (비공개)	민정협력담당관
	안보리결의('12.3.23)	유엔 아프가니스탄 임무단 임무기한 연장	문서 (비공개)	국제평화협력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보고('12.9.18)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	문서 (비공개)	국제평화협력과
파병 준비	서희·제마부대 환송행사 계획('04.4.17)	서희·제마부대 환송행사	문서	국방부 총무과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선발대 해외파병 파견군무 임명('04.4.20)	이라크 자이툰 사단 파병인원에 대한 선발대 파견 명령	문서	국방부 총무과
파병 간	아프간 폭탄테러 (고)윤장호 하사 관련 쟁점관리('07.3.9)	(고) 윤장호하사 관련 쟁점사항 관리 방안	문서 (비공개)	정책홍보팀

19) ‘공공기록관리법’ 제13조 제1항 특수기록관을 설치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20) ‘공공기록관리법’ 제 14조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육군본부에서는 기록정보관리단,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에서는 역사기록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생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군 기록의 특수성에 기인한 비공개 설정으로 판단된다.

합참 기록관은 국방부와 동일하게 자체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병 전 단계에 대한 합참 자체 생산기록이 자체 기록관에 보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간 파병준비 관련보고』(2009.11.5), 『이라크파병 계획수립 및 부대편성』 등과 같은 기록들이 합참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합참에서는 자체 생산한 기록물 외에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군편성 파병부대에서 생산한 기록물들을 이관받아 보존하고 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기록들이 이관 및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1991년 걸프전 파병과 1994년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2003년 서희·제마부대 등의 의료부대의 기록은 단 한건도 이관되지 않는 등 일부 기록관이 부실한 부분도 확인되었다.²¹⁾ 합참 기록관의 해외파병 관련 기록물의 유형별 보존 현황 및 세부 기록의 사례는 <표 4>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합동참모본부 기록관 유형별 파병기록 보존 총괄 현황

합계	비전자 문서 (종이)	전자 문서 (RMS)	시청각 기록				구술 기록	행정 박물관	간행물	기타 (신문 기사 등)
			사진 (파일)	사진 (필름)	사진 (현상)	영상 (비디오)				
363,545	85,921	217,062	54,607	2,363	2,036	744		522	290	-

<표 5> 합참 기록관 파병기록 사례

영역	기록명	내용	기록유형	출처
정부 의사결정	걸프전파병(국무회의록)('91.2.1)	한국공군 걸프지역 공군 파견안	문서	국방부의정과
파병장교 선 파견	협조장교 파견('05)	협조장교 선 파견 후 파병부대 임무수행 여건 협조	문서	해외파병과
파병준비	동명부대 해외파병 계획수립 부대편성('07.6.5)	동명부대 지원 파병계획	문서 (비공개)	해외파병과
	합참 아프간 파병준비 관련보고('09.11.5)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전 후 상황 관련 보고	문서 (비공개)	해외파병과 및 작전과
	걸프전('91.)	지령 91-1호 의료지원단 사우디 파견 명령	문서철 (비공개)	해외파병과
파병 간	동명부대 파병작전 문서철('11)	동명부대와 관련한 문서	문서철 (비공개)	
	동명부대대의문서인사철	동명부대 대의 인사지원내용		
	아프간파병작전(2003)	아프간 파병 지원문서		
	파병부대 현지 지도방문철('07)	현지 해외파병부대 지도방문관련		
파병 복귀 후	아프간 한국 PRT 임무종료식 참석결과 보고('14.6.26)	외교부 주관의 PRT 임무종료식 행사 참석관련 현지 방문 결과	문서	군수부
	걸프전 파견 역사자료	국군의료지원단 걸프전파견 역사자료	문서	해외파병과

21) 국방부 혁신관리팀, 『기록관리 관련 검토 질의서』, 2007.

해외파병과에서 생산한 기록들은 해외파병 추진 과정에서의 파병계획, 부대편성 등 합참이 파병전담 부대로서 생산한 기록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파병부대(국군편성부대)에서 직접 이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베트남전 관련 기록들은 다수 소장하고 있었다. 또한 파병 전 추진 단계에서 국회동의 전이라도 파병요청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위해 파병준비 안을 미리 마련해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파병정책과 관련된 문서철 대부분의 보존연한이 준영구,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세부내용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5단계 파병준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는 각 군 본부는, 국방부(합참)에서 파병지령이 하달되면 파병부대 구성, 부대예규 및 교전수칙 작성 등의 실질적인 파병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기록들을 생산한다.

7단계 파병임무가 종료된 해외파병 부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내에서 운영되는 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기록관에 해당하는 각 군 본부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해야만 한다. 단 해외파병부대가 합동부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파병업무규정

제20조에 의해 합참 기록관으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안보분야의 특수기록관인 각 군 본부 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는 해외파병 기록은 30년이 경과한 영구기록에 대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공공기록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해외파병 기록물들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베트남전 파병 관련 기록물들은 생산 이후 30년이 경과하여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및 보존되고 있지만, UN 가입 이후의 해외파병은 아직 30년이 경과되지 않아 파병부대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은 없는 상태이다.

대다수의 파병부대는 육군 위주의 편성 부대로서, 해당 부대에서 생산된 기록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에서 수집을 전담하고 있으며,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는 역사기록관리단에서 기록물 수집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각 군 본부 기록정보관리단 및 역사기록관리단에서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는 해외파병 관련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에서 수집하여 보존중인 해외파병 관련 기록의 사례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 각 군 본부 특수기록관 유형별 파병기록 수집 총괄 현황

기관	합계	비전자문서 (종이)	전자 문서	시청각 기록			행정 박물	간행물	기타 (신문기사 등)
				사진	영상	녹취록			
육군(기록정보관리단)	171,047,511	5,836,552	165,134,697	51,238	8,419	289	2,206	14,110	.
해군(역사기록관리단)	7,438	5,369	1,434	3,147	93	-	61	94	1
공군(역사기록관리단)	4,422	1,406	1,987	819	-	-	206	4	-

22)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2항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7> 육본 기록정보관리단 파병기록 수집 사례

영역	기록명	내용	기록유형	출처
정부결정	동명부대 파병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조치('08.7.16)	동명부대 파병연장 국회통과에 따른 준비내용	문서	작전과
	레바논지역 추가파병 관련보고('09.3.22)	동명부대 추가파병 관련 논의	문서	작전과
파병홍보	이라크 추가파병 홍보계획('04.1.12)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계획	문서	공보과
파병예산 확보	아프간 재건지원단 파병 예산 국무회의 심의결과('10.3.17)	예산소요제기/편성요구/편성결과 등	문서	예산통제과
현지협조단 운영 (현지조사)	레바논 파병관련 정부 실무시찰단 현지 활동결과('06.10.27)	레바논 파병 전 사전평가를 위한 정부(외교부, 국방부) 실무시찰단 활동결과	문서	작전지원과
	아프간 파병관련 군 현지 협조단 운용결과('10.4.5)	파병부대 임무/주둔지 확인	문서	군수기획과
파병준비 계획/결과	레바논 파병준비계획 장관보고 결과('07.1.5)	레바논 파병준비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 보고	문서	작전지원과
	동명부대 4진 파병준비 결과 및 교대계획 보고('09.1.21)	선발대 운용, 전투근무지원, 3진과의 교대계획 등	문서	작전과
파병준비 인원선발	이라크파병 창설기획단 선발결과('04.1.8)	이라크 파병 창설기획단 선발결과 공지	문서	육본 인사사령부 인사운영통제과
	해외파병부대 적격자 선발방안('01)	중앙선발: 면접, 중앙고시, 선발심의	문서	인사행정과
현지 임무수행 간	해외파병부대 현지 지도방문 계획('04.10.19)	이라크 파병부대 현지 지도방문 계획	문서	정보작전참모부 작전처
	자이툰사단 대통령 격려서신(2004)	자이툰사단 장병을 위한 대통령 격려서신	문서	청와대
	레바논 파병장병 UN 사무총장과의 간담회 계획	UN 사무총장방문 시 장병들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	문서	작전과
파병 전 교육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2단계 파병교육 후 교육훈련 및 부대운용지침	이라크 파병부대 파병 전 교육 2단계 후 교육훈련 및 부대운용에 대한 지침 *공개 재분류건	문서	정보작전참모부
복귀/교대	해외파병 교대준비계획('03.8.8)	이라크 파병부대 교대준비 계획	문서	정보작전참모부 작전처
파병 복귀 후	이라크·아프간 파병 군수 교훈집 작성결과('06.3.7)	이라크·아프간 파병에 대한 군수분야 교훈집 발간	문서	군수기획과
	해외파병부대 기록전시회 계획('09.3.7)	해외파병부대 관련 문서 및 사진 등의 전시회 계획	문서	인사사령부 총무과
	서희·제마부대 사진집('05)	이라크 서희·제마부대활동사진	사진	군사연구소

파병 예산확보, 현지 협조단 운용, 인원선발 등과 관련된 기록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문서 위주의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전부터 서희·제마 부대, 걸프전, 다산·동의부대, 이라크 자이툰부대 등과 관련된 파병기록 중 상징적인 기록물들을 선별하여 육군본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록 전시회를 가지기도 한다.

다음은 국방부 산하기관으로서 연구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군사편찬연구소, 파병복귀

이후 귀국보고서 작성을 주관하는 국제평화활동센터의 파병기록 소장현황을 살펴본다. 앞서 설명한 군사편찬연구소와 유사성적인 육군의 군사연구소는 파병사 등 소장기록을 모두 기록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파병과 관련된 연구 간행물을 발간하여 자체소장(정보자료실)하고 있었으며, PKO 파병사 관련자료 총 6건²³⁾과 기타 단행본들²⁴⁾도 자체소장하고 있다. 또한 2010년도부터는 파병에서 복귀한 장병들을 대

상으로 증언록을 작성하여 자체 보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현황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내용을 살펴보면 유엔 가입 이후 최초의 UN PKO 파병이었던 상록수부대를 비롯한 서희·제마, 동티모르, 앙골라, 다국적군 파병인 아프간 동의·다산부대와 이라크 자이툰 사단등과 관련된 8년의 파병기간은 증언록이 생산되지 않았다. 특히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이었던 상록수부대와 실제 걸프전 전투 지역에 파견되었던 서부사하라 국군의료부대 및 공군수송부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베트남전을 제외한 전투경험이 없는 한국군에게 해당 지역 파병장병들의 증언록은 전장지역에서의 경험과 실상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더없이 소

중한 기록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개인별 간략한 분량의 전투위주 실 사례에 대한 경험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외의 사항은 비공개로 지정되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는 파병에서 복귀한 장병들을 소집하여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으로서, 자체 기록관이 없기 때문에 일부 기록물만 부서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파병 성과집 및 귀국보고서는 자체보관 및 국방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있다. 총 60여건의 귀국보고서가 국제평화활동센터 자체 홈페이지에 PDF 파일의 형태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소장 중인 해외파병 관련 기록의 사례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8> 군사편찬연구소 파병기록(녹취록) 총괄사례

영역	기록명	내용	기록유형
파병 복귀 후	레바논 평화유지단 증언록 1(1진)('10)	동명부대(29명)	시청각 (녹취)
	아이티 재건지원단 증언록 1(1~2진)('11)	단비부대(30명)	
	아프간 재건지원단 증언록 1(1진)('11)	오쉬노부대(30명)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 증언록 1(1진)('12)	청해부대(30명)	
	UAE 군사협력단 증언록 1(1~2진)('12)	아크부대(30명)	
	아이티 재건지원단 증언록 2(3~6진)('13)	단비부대(30명)	
	아프간 재건지원단 증언록 2(2~5진)('13)	오쉬노부대(30명)	
	남수단 재건지원단 증언록 1(1진)('14)	한빛부대(30명)	
	레바논 평화유지단 증언록 2(2~5진)('14)	동명부대(29명)	
	아프간 재건지원단 증언록 3(6~8진)('15)	오쉬노부대(30명)	
	UAE 군사협력단 증언록 2(3~8진)('15)	아크부대(30명)	

- 23) PKO 관련 파병사는 한국군 최초 전투부대였던 상록수부대에 관한 『동티모르파병과 띠모르레스페 탄생』(2006), 소말리아, 앙골라, 서부사하라를 소개한 『한국의 PKO 파병사』(2007), PKO 가입(1991) 후의 파병부대 활동을 담은 『지구촌에 남긴 평화의 발자국』(2011), 상록수 공병부대의 활동상을 담은 『PKO 활동의 교과서 상록수부대 파병사』(2012), 걸프전의 의료부대와, 공군수송부대의 내용인 『국군 걸프전쟁 파병사』(2013), 마지막으로 국군의 서희, 제마, 자이툰, 다이만부대를 소개한 『국군 이라크 자유작전 파병사』(2014) 등으로 파병활동 개관과 지역소개, 임무활동 및 성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24) 주월 한국군 전사(11권), 부도(11권)(1966~1985) 전집(비둘기,맹호,청룡,백마,십자성,백구,은마 등 전 부대), 월남 파병과 국가발전(1966), 한편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2004), 물어보세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2004),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사령부/직할부대편)(2004), 한민족 역대 파병사(고려, 조선파병(민족전란서 시리즈13(2002)),

〈표 9〉 국제평화활동센터 파병기록 사례

영역	기록명	내용	기록유형
귀국 보고서	동명부대 귀국보고서('15.5)	동명부대 15진 귀국보고서	문서
	항구적자유작전참전결과('08.1.18)	다산9진·동의11진 부대 귀국보고서	문서
파병 성과/교훈집	동명부대 16진 파병성과 및 교훈집('16.11)	레바논 동명부대 16진 파병활동상 성과 및 교훈	발간물
	항구적 자유작전 참전 결과	동의부대 1진 귀국보고서	문서

부대단위 및 개인 파병에 관한 귀국보고서는 국제평화활동센터 내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파병 교훈집으로 발간하여 대내외 홍보 및 활용토록 하고 있다. 『동명부대 귀국보고서』의 경우 15진에 관한 사항으로 레바논의 국가 및 문화 소개, 15진의 창설부터 부대전개과정, 파병 후 임무관련, 민사작전 소개 및 유의사항, 특히 홍보와 관련된 공보분야에 비중을 많이 두었으며, 홍보실적 사례도 탑재하고 있다. 레바논관련 주요 정부인사 및 인물에 대한 소개와 동맹군들의 장비를 소상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15진에 관한 단편적인 사항으로 파병의 시작점인 1진부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였다.

3.4 국회(국회도서관)

국회에서 생산된 해외파병 관련 기록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인 결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되었던 파병동의안인 『국군부대의 이라크파병 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2006.12.12)이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회의록인 『제19대 국회 회의록-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제 329호(5차)』(2014.11.24) 등 정부와 국회에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파병동의안과 국회 내부에서 진행된 다양한 회의의 결과들을 확인 가능한 기록들이 보존되고 있었다. 현재 국회도서관을 통해 검색 가능한 해외파병 관련 기록의 사례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0〉 국회도서관 파병기록 사례

영역	기록명	내용	기록유형
국회 동의안	국방위원회 회의록[제263회(1차)] / 대한민국 국회 제17대 국회회의록 [상임위원회, 2006.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크 파견연장/감축 동의안(정부제출) • 자이툰부대 철군촉구 결의안 •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 공병부대의 대테러파견연장 동의안 •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 파견동의안 등 포함 	문서
국회 동의안	제19대 국회회의록[상임위원회, 2014.11.24] /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제329호(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UN 평화유지활동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UN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UN 레바논 평화유지단(UNIFIL) 파견 연장 동의안 등 포함 	문서
	국군부대의 이라크파병 연장 및 감축 계획 동의안[국방위원회, 2006.12.12]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및 감축 계획에 관한 내용	문서

4. 파병부대별 기록 수집 현황 [동명부대와 다산·동의 부대의 파병 기록을 중심으로]

앞서 3장에서는 국내 파병단계별 추진기관의 소장된 기록의 현황과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파병기록과 관련한 규정을 <표 11>에서 살펴보고, 실제 파병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에서 이관하여 수집된 기록의 유형별 총 현황 <표 12>를 살펴본 후 실제 파병부대를 사례로 파병단계별 추진 관련기관에서 정부정책과 관련한 기록들과 현지 파병부대에서 생산되어 이관되는 기록, 파병복귀 후의 귀

국보고서 등의 기록들을 일련의 컬렉션화를 통하여 재정리하였다. 사례부대는 UN PKO의 최장기간 파병부대이며 가장 모범적인 UN PKO 부대로 칭송받았던 동명부대, 그리고 UN 다국적군 파병부대로서 파병 당시 찬반 논란이 되었던 미국의 9·11 대테러작전에 투입된 공병·의료부대인 다산·동의부대를 선정하였다.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제5조(부서별·기관별 업무분장)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파병관련 자료 정리 및 존안’을 관장해야 한다는 책임소재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군에서 자체적인 규정에 의거

<표 11> 육군규정에 명시된 해외파병 기록물관리 관련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요약
제46조 파병부대 기록물 관리	목적	• 육군 단일군으로 편성된 해외파병부대의 기록물관리 전반을 규정 ※ 합동군에 대한 기록물관리는 합참 특수기록관에서 관장
	책임	• 파병 부대의 모든 기록물 관리책임은 인사참모처(인사행정과)에 있음 - 기록물 종합 및 정리, 등록관리, 공개구분, 생산 현황통보, 이관 수행
	파병 전 관리	• 기록정보관리단에서 파병 예정 부대원 대상으로 기록관리 소양교육과 기록물관리책임자(부서) 대상으로 기록관리자 교육 실시 ※ 필요 시 종합행정학교에서 파병부대 기록물관리 교육 대행 가능 • 파병부대장은 기록 보존시설 및 환경 구비를 위한 물자 요청 및 구비
	파병 중 관리	• 파병부대의 업무활동 결과는 교대부대와 향후 파병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기록화하여 관리토록 명시 • 현지 작전활동, 대민지원, 외국군 부대와의 업무협조 등은 기록으로 생산 및 관리하며, 사진, 비디오 등 시청각기록물 병행 생산이 원칙 • 파병부대 현지 진료기록은 일일단위로 작성 유지 • 파병부대의 기록물 이관은 기록정보관리단에서 확정된 이관대상 목록에 따라 편철 및 정리작업 후 파병 종료시에 이관함이 원칙
	기록물 이관	• 파병부대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이관대상 기록물을 귀국과 동시 최단 기간 내에 기록정보관리단으로 이관 실시
	활용	• 기록정보관리단은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통해 파병역사유지 및 차후 파병부대에 필요한 기록정보 제공 • 이용자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정보관리단장은 적시적절하게 제공하여 기록물의 역사적, 증거적 가치를 제고시켜야 함
	지도/감독	• 기록정보관리단장은 파병부대 기록물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시 점검팀을 구성, 현지 방문조사 실시 가능 • 기록관리 지도방문, 점검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파병책임 부대에서 지원
	기타 사항	• 기록관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파병부대에서는 생산된 모든 기록물을 폐기없이 이관

〈표 12〉 파병부대별 수집 기록물 총 현황

구분	소계	비전자 문서(종이)	전자 문서	시청각 기록			구술 기록	행정 박물	간행물	기타 (신문기사 등)	
				사진	영상	녹취록					
UN PKO	동티모르 (상록수)	202	190	·	3	4	·	·	5	·	·
	레바논 (동명)	53,874	9,375	43,423	908	59	·	·	109	·	·
	아이티 (단비)	60,395	52,255	8,019	29	14	·	·	78	·	·
	남수단 (한빛)	16,841	5,226	11,610	1	4	·	·	·	·	·
다국 적군 PKO	아프간 동의/다산	15,427	4,316	10,828	186	90	·	·	7	·	·
	아프간 (오쉬노)	481	458	·	1	14	·	·	8	·	·
	이라크 (자이툰)	258,326	13,635	243,838	677	25	·	·	151	·	·
국방 협력	필리핀 (아라우)	699	·	636	·	·	·	·	63	·	·
	UAE (아크)	9,679	·	9,679	·	·	·	·	·	·	·
합 계	415,924	85,455	328,033	1,805	210	·	·	421	·	·	

해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해외파병부대가 육군 부대임을 감안하여 육군본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해외파병부대 기록물 관리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다음 수집된 기록물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육군규정153 『기록물관리 및 인쇄규정』(2016. 4.15. 부분개정)의 “제9장 파병, 해체 및 개편부대 기록물 관리” 제46조 (파병부대 기록물 관리)에서는 육군 단일군(합동군의 경우는 합참 특수기록관에서 관장)으로 편성된 해외파병부대의 파병 준비로부터 귀국 후까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파병부대에서

생산 및 이관한 기록물의 보존상태 확인을 위해 수차례의 기관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을 집계하였다. 파병부대별 보존 기록물의 총 현황은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 동명부대와 다산·동의부대를 중심으로 수집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UN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으로 파병된 동명부대는 레바논 남부지역(티르)에 파견되어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정전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며, 세부적인 임무는 감시정찰, 레바논 군 협조·지원, 지역주민 순회 진료(9만명 돌파),²⁵⁾ 수의 진료(가축 19,231마리), 태권도·한국어·컴퓨터·제봉교실 운영, 도로 건설 등

25) 국방일보, “동명부대 파병 9주년 의료지원 9만명 달성”, 2016. 7. 27.

이다. 동명부대에서 생산하여 현재까지 이관된 기록물은 총 53,874건으로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자문서(9,375건)에 비해 전자문서(43,423건)의 비중이 훨씬 높는데, 이는 2007년부터 전자기록 생산 및 등록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시청각기록 측면에서 동영상 기록은 다수 생산되었으나, 구술기록 생산은 단 한건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파병단계별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부터 동명부대에서 파병기간 중 생산하여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 및 전쟁기념관으로 이관하여 수집된 기록물들의 사례는 <표 13>과 같다.

실제 동명부대가 활동을 하면서 생산한 『동명부대 감시정찰 작전임무 수행 계획보고』를 통해서 동명부대의 주 임무가 분쟁예방과 치안안정을 위한 레바논 군 지원부대임을 알 수 있

<표 13> 동명부대 파병기록물 수집 사례

영역	기록명	내용	보존연한	기록유형	출처	
정부 정책 결정	유엔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참여문제 검토('05)	레바논 동명부대의 최초 파병 전 검토내용	영구	문서	비서실/ 대통령기록관	
	협조장교 파견('05)	협조장교 선 파견 후 파병부대 임무수행 여건 협조		문서	해외파병과/ 합참기록관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동의안('06.12.4)』	레바논 사태 안정화와 중동지역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국군부대를 파견한다는 동의안	영구	문서	외교부 유엔과/ 사료관	
	국방위원회 회의록[제263회(1차)] / 대한민국 국회 제17대 국회의원회 [상임위원회, 2006.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크 파견연장/감축 동의안(정부제출) • 자이툰부대 철군촉구 결의안 •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 공병부대의 대테러파견연장 동의안 • 유엔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동의안 등 포함 	영구	문서 (회의록)	국회/ 국회기록보존소	
파병 준비	동명부대 해외파병 계획수립부대편성('07.6.5)	동명부대 지원 파병계획	영구	문서 (비공개)	해외파병과/ 합참기록관	
	레바논 파병준비계획 장관보고 결과('07.1.5)	레바논 파병준비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 보고	영구	문서	육본작전 지원과/ 기록정보관리단	
파병 간	임무수행계획보고('07)	동명부대 감시정찰 작전임무수행 계획보고	3년	문서	파병부대/ 기록정보관리단	
	07-12 동명훈련계획('07)	07-12 동명 자체훈련 계획	3년	문서		
	메달퍼레이드 민사지원계획('10.4.5)	메달수여식 및 퍼레이드 간 민사지원 계획	3년	문서		
	한글컴퓨터교실 수료식계획('10.2.10)	현지인에 대한 한글컴퓨터 교실 수료식	3년	문서		
	정부대표단 위문방문 영접계획('12.12.7)	정부대표단 위문방문에 대한 브리핑, 식사, 장병들과의 만남 등	3년	문서		
	동명인의 날 행사('12.11.1)	한국문화를 알리는 외국군과의 교류행사(태권도, 한국음식 소개 등)	3년	문서		
	동명부대 감시정찰 작전 임무 수행 계획보고('07)	감시정찰 임무 수행 관련 계획	3년	문서		
	현지 언론매체 기자간담회 계획 보고/결과 보고('12.10.8 / 12.30)	현지 언론매체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1차,2차,3차) 계획 및 결과	3년	문서		
	6진2차 주민숙원사업 선정심의 계획('10.6.4)	주민숙원 사업 조사 선정심의 후 공사추진에 관한 내용	3년	문서		
	부대기/관인류	부대상징용 기 및 부대관인	영구	기치류/ 박물		파병부대/ 전쟁기념관
	UN 사무총장 격려서신	사무총장 격려서신				
	UN 메달/부대원증	부대원들에게 수여된 UN 메달 및 부대원 증명서				
	UN 감사패	동명부대에 전달된 UN의 감사패				
파병 복귀 후	동명부대 15진 파병성과 교훈집('15.5)	동명부대 15진에 대한 파병성과	영구	간행물 문서	국제평화지원단 (국방부기록관)	
	동명부대 귀국보고서	동명부대 8진 귀국보고서				

고,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이나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민사활동의 기록들이 다수 나타나 있다. 『현지언론매체 기자간담회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현지 홍보활동을 활발히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 동맹부대 16진의 경우 총 264회의 매체 홍보 결과가 나타났다.

국내매체 국방일보의 “신이 내린 선물 밀거름 민군작전”, SBS의 “세계로 간 평화의 전사들 (국군의날 해외파병 다큐)” 등 국내매체 130여 회 보도와 더불어, 현지중앙매체 NNA 등에서도 가족과 같은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제하의 보도와 함께 각종 수료식, 준공식 등과 관련해 134회의 홍보 실적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신문기사는 보존되고 있지 않았다. 즉 신문기사는 민간영역의 기록으로 여기며, 공공영역의 기록으로는 간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의 다면성 측면에서 일상을 엿볼 수도 있고 당대 사건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신문기사들을 관련 기록과 함께 보존하는 방안이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문서위주 기록 이외에도 부대기와 사진, UN 반기문 사무총장 격려서신과 UN메달 및 부대원증 등의 상징적인 박물관은 전쟁기념관(해외파병실)과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에서 운영 중인 해외파병 전시실에 각각 전시되어 있다. 소장기관 측면에서는 파병검토 단계에서의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최종단계의 국방부기록관까지 총 8개의 기관에 분산되어 소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다국적군 PKO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산·동의부대는 대테러부대의 성격을 가지고 미국이 주도한 ‘항구적자유작전’에 참여

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전장 환경에서의 작전수행 능력구비, 세계평화와 국위선양 등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신이 내린 축복’으로 찬사를 받았던 부대이다. 한국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문화의 핵심인 친근감과 정을 통한 문화중심적 활동은 분쟁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친문화적 활동으로도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다산부대는 기술집약적인 시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으로 동맹군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바그람기지뿐만 아니라 아프간 전역에서 ‘황무지에서 기적을 일궈내는 공병’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군의 우수성을 알렸다. 동의부대는 사랑이 담긴 인술의 실천(약 26만명)으로 현지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으며, 우수한 진료서비스와 친절함, 현지 여성 및 어린이 대상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통한 위상상태 향상 등의 성과는 동맹군들 사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다산·동의부대의 파병 단계별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부터 파병기간 중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 및 국방부 등에서 수집한 기록물들의 사례는 <표 14>와 같다.

『아프가니스탄 전투수행지침서』, 『아프가니스탄 반군 전략전술소개』 등의 기록은 현지 아프가니스탄이 무장세력과의 교전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기록이다. 실제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세력과의 교전이 수시로 발생했던 지역이었으며, 2009년도에는 자살 폭탄 테러로 46명의 다국적군이 사망하는 등 꾸준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 윤장호

〈표 14〉 다산·동의부대 관련 수집 기록물 사례

영역	관련기록	내용	보존연한	기록유형	출처/소장처	
정부 정책 결정 (파병 검토/ 국회 동의)	항구적자유작전 다산동의부대 참여문제 검토('05)	다산·동의부대의 파병 전 검토내용	영구	문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기록관	
	안보리결의('12.3.23)	유엔 아프가니스탄 임무단 임무기한 연장	문서 (비공개)	문서	국제평화 협력과/국방부기록관	
	국방위원회 회의록[제263회(1차)] / 대한민국 국회 제17대 국회 회의록[상임위원회, 2006.12.12]	파견 동의안 및 파견연장 동의안 등 포함	영구	문서 (회의록)	국회/ 국회기록보존소	
	해외파병부대 파병기간 연장 동의안 "국회본회의통과관련"('05.1.6)	아프간 파병 국회본회의통과 관련	영구	문서	국방부전력 정책팀/국방부기록관	
	아프가니스탄 파견 국군부대 철군 촉구안 국방부 검토 의견제출 ('11.7.21)	아프간 다산·동의부대 철군 촉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	문서 (비공개)	문서 (비공개)	국방부 민정 협력담당관/ 국방부기록관	
파병 준비	합참 아프간 파병준비 관련보고 ('09.11.5)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전 후 상황 관련 보고	준영구	문서 (비공개)	해외파병과/ 합참기록관	
	다산 5진/동의 7진 부대전개 계획 CJTF-76 사령부 / 바그람기지 규정 (2008.1.18)	선발대, 본대 세부전개 계획 사령부 및 바그람기지에서 적용되는 기본 규정집	3년	문서	파병부대 (동의/다산) /기록정보 관리단	
아프간민사활동주간보고('04)	민사활동 주간단위 보고(합참)	3년	문서			
파르완주 작전결과 보고(2008)	파르완주에 실시된 작전에 대한 주간 단위 합참 보고문서	3년	문서			
의료진료활동('05.8.29)	동의부대 진료활동	3년	문서			
외래환자 연명부('05.1.1)	현지인 외래환자 진료연명부	3년	문서			
아프가니스탄 폭발물소개자료('08.1.18)	폭발물소개	10년	간행물	파병부대 /기록정보 관리단		
아프가니스탄 전투수행지침서('08.1.18)	아프가니스탄 교전수칙	10년				
아프가니스탄 소개('08.1.18) / 이슬람 소개책자('08.1.28)	아프가니스탄 및 이슬람 문화 등 소개 소재자	10년				
아프가니스탄 반군 전략전술 절차 ('08.1.18)	아프가니스탄 반군들의 전략전술 절차소개	10년				
윤장호 하사 헌정행사 협조회의결과 ('07)	고 윤하사의 미군 "Camp Yoon" 추모관 헌정식 협조회의	3년	문서 (비공개)			
고 윤장호하사 매화장보고서('07)	화장 및 매장 결과 보고	영구	문서			
아프간 폭탄테러 고 윤장호 하사 관련쟁점관리('07.3.9)	고 윤하사 관련내용	준영구	문서 (비공개)		정책홍보팀/ 국방부기록관	
파병 복귀 후	항구적자유작전참전결과	다산·동의부대 귀국보고서	영구		문서	PKO/ 국방부기록관
	다산·동의부대 사진집('05)	다산·동의부대 활동 사진첩			사진	군사연구소 /기록정보 관리단
	해외파병부대 사진집 발간결과보고 ('09.4.17)	아프가니스탄 다산·동의부대 파병 (02~07) 활동상 관련 사진집 발간결과 보고			영구	군사연구소 /기록정보 관리단

하사 매화장 보고서』는 2007년 폭탄테러로 인한 고귀한 희생이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기록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의 사건관련 최초보고, 국방부의 장의행사 및 성금지원 계획,

공보조치 등의 기록물 확인을 통해 당시 발생한 사건의 개요는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정책홍보팀에서 생산한 『아프간 폭탄테러 고 윤장호하사 관련 쟁점관리』 문서는 비공개

문서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건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미군에 의해 건립된 추모관인 “Camp Yoon”의 헌정식과 관련된 세부내용, 사건 당시 동맹군들의 열렬한 추모 행렬 및 테러와 관련된 뒷이야기, 사건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이 바라본 사건현장의 모습 및 반응, 가족들과 국내 시민사회의 반응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들도 확인할 수 없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기록 조사 과정에서 『피랍한국인지원계획』을 통해서 아프간 피랍한국인 사건 발생 당시 동의부대(해병대 경계부대)가 구출작전에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비공개 설정으로 상세내용의 파악은 어려웠다.

다산·동의부대는 파병당시 미군주도의 동맹군의 파병의 성격이었던 이라크 자이툰부대와 함께 시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파병이었으며, 시민단체의 경우 라이트코리아, 자유개척청년단 등 보수시민단체는 아프간 파견 시 오히려 증파를 요구하는 반면, 참여연대, 평화재향군인회 등의 진보 단체들은 아프간 파병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겨레, 경향 등 진보 언론들은 국민적 동의를 없는 전투병의 파병을 비판하며 미국 중심의 파병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파병철회를 요구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파병 목적 및 취지²⁶⁾를 부각한 국정브리핑 10회, 국방매체 보도자료 33건, 조선일보 등 기타 언론

보도 34회 등을 실시하여 파병의 당위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파병과 관련한 반대안, 시민사회 입장에서의 파병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한 쟁점과 논의에 대한 기록은 문서위주의 극소수로, 그마저도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내용 파악이 제한되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위의 신문보도, 다큐, 저널 등의 민간영역의 다양한 기록을 함께 보존한다면 공적인 영역의 기록과 함께 다면화된 측면에서의 당대의 파병상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파병기록은 보고서 위주의 공적행위 기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군과의 교류 행사나 현지 주민 대상의 민사작전 활동상, 다국적군과 함께 동일한 주둔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파병부대원들의 모습 등과 관련된 구술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산·동의부대는 앞서 설명한 동맹부대나 자이툰부대 등과는 달리 동일한 기지 내에서 20여 개국의 가장 많은 동맹국들이 함께 생활했던 부대이기도 하다. 즉 기지 내에서 동맹국들과 크고 작은 문화교류가 활발했을 것이며, 파병부대의 일상생활 측면에서도 동맹국들과 환경적인 요소나 지원 등에서 적잖은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동맹국 부대들의 생활 환경이나 지원 수준, 문화교류를 통해 파악한 외국군의 성향이나 문화적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은 향후 우리 군이 새로운 다국적군 파병을 계획할 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파병부대원들의 일상적인 측면에서는 임무 위주 뿐만 아니라 여가·취미 활동, 장병들의 갈등, 생각 등의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록의

26) 첫째,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글로벌 기여는 불가하며, 재정지원으로도 글로벌 책임은 충분히 수행이 가능. 둘째, 아프간 파병은 미국에 대한 우리의 사대주의 외교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국력에 맞는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파병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하는데 따른 결정임을 강조하였음.

생산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의료기록과 관련해서는 동의부대의 경우 124,100건의 의무기록이 보존되고 있었으며, 상당히 활발한 의료지원활동을 펼쳤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²⁷⁾ 국방부훈령 제1761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2015.1.2. 개정) 제19조(의무기록의 보관, 보존 및 이관)에서는 해외파병부대 의무기록 중 현역이 아닌 환자, 즉 예비역이나 민간인, 해외파병부대에서 진료한 현지인 및 외국인 등과 관련된 의무기록의 보존방법은 현역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의부대의 의무기록 보존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지인과 관련된 의무기록의 양은 상당히 많은 편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지인 의무기록들은 모두 법령에 의해 영구기록물로 분류되어 보존된다. 그러나 생산되는 기록의 양에 비해 활용성은 지극히 낮아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 보존활용과에서도 의무기록의 활용 및 보존관리 기준 정립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임을 확인하였다.

5. 맺음말

기록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ISO15489²⁸⁾에서는 기록이 내용, 맥락, 구조를 가지며, 인간 기억의 확장으로서 또는 설명책임의무를 다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외파병 관련 기록이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파병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설명책임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만 하고,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함으로써 인과관계와 쟁점인 맥락을 밝혀낼 수 있어야만 한다(오명진, 2012).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외파병 기록의 기관별 산재된 보존, 검색 및 열람의 한계, 특정 파병 건에 대한 컬렉션화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해외파병 기록은 설명책임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고, 맥락을 밝혀내기도 쉽지 않는 등 기록관리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식별되었다. 앞서 살펴본 해외파병 단계별 생산기록 현황과 주관 기관별 소장기록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그리고 현황 조사과정에서 필자가 체험하고 느꼈던 사항들을 기초로 정리한 해외파병 기록물 관리상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검색 서비스의 이용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기록물관리의 4대 원칙으로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4대 원칙들은 기본적으로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을 위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비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이다. 또한 현황에서

27) 육군본부 기록관리정보단 보존활용과를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임.(2015.10.7)

28)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TC46/SC11(정보와 도큐멘테이션 기술위원회/보존기록·기록관리 분과위원회)이 기록관리 정책과 절차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2001년도에 공식 채택한 국가표준. ISO15489는 기록관리의 기본원칙과 틀을 제공하는 '제1부: 일반사항'과 이를 실행하는데 유용한 세부사항을 제시하는 기술보고서 '제2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003년도에 ISO15489를 그대로 수용하여 KS로 제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한글판으로 번역하여 개정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의 95% 이상이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이기에, 4대 원칙은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한다. 특히 이용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후대에 이루어질 다양한 연구와 교육, 예술 창작활동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지기 위해 해외파병 기록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해외파병 기록들은 관련 기관으로 이관되어지고 난 이후 검색 및 열람 서비스가 제한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목록만 공개될 뿐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설정된 자료들이 너무 많았다.

둘째, 해외파병 기록은 거의 대부분 공적영역에 국한된 기록으로, 사회적 기억으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록은 집단적 기억의 표상이기에 집단의 경험과 일상에 대한 기억의 소환을 통해서 사회적 기억으로서의 기록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존되고 있는 해외파병 기록은 대다수 업무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공문서 위주의 공적 행위 프레임에 국한되어 있고 파병장병들의 일상이나 경험을 담아내는 기록은 거의 없어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당대의 파병 활동상을 제대로 조명하거나 파병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셋째, 해외파병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비해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파병복귀 이후 이관 및 보존에 대한 통제 또한 미흡하다. 사회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과 결부되어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해외파병은 분명 후대에 온전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기록들로 다수 생산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파병활동 수행 간 생산되는 각종 기록들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중요성의 인식 하에 육군규정153 『기록물관리 및 인쇄규정』 제46조 ③항에도 파병 전에 소양교육 및 관리자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파병준비 과정에서 기록물 생산, 관리, 이관 및 보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문적 교육도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사전 교육을 받은 인원 또는 기록관리 전문요원²⁹⁾이 파병부대에 편제되어 있지 않다. 물론 현재에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들은 일정한 절차에 의거 자동으로 이관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생산되는 각종 문서 기록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이나 통제 없이 업무담당자의 실무적인 판단으로 이관 및 보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단일 파병건과 관련된 기록들을 컬렉션(시리즈)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기록이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연관된 기록들과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의 파병기록 관리체계는

29) 2005년 3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음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선발하여 국가기록원 및 중앙행정부처에 첫 배치하였다. 자격기준은 기록관리학 석사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록관리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였으나, 2010년 정부의 학력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학력요건을 석사에서 학사로 완화하면서 전문성 검증 위한 시험제도가 도입(2012.2 시행)되어 2013년 3월 제1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이 시행되었다. 이후 공공기관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미흡하게나마 배치되고 있으며, 육군도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 7월 육군종합행정학교 자체적으로 기록관리 교육체계를 정립하여 국가기록원으로 부터 양성교육 승인을 받아냈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전문요원 양성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다원화된 업무형태로 파병이 추진되면서 특정 파병과 관련된 기록들이 다수의 유관 기관으로 분산 이관되고 보존됨으로 인해 맥락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일 사건별로 맥락을 같이 하는 기록들이 시리즈의 형태로 묶여서 수집, 이관, 보존되는 체계가 아니라 파병의 성격 혹은 기록물의 성격 및 활용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으로 이관 및 보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특정 파병부대에 대한 기록을 단일 기관을 통해 접근하는 것은 심각하게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해외파병 기록은 의미 있는 기록의 재생산을 위한 기록의 다양성과 풍부함이 부족하다. Elizabeth Shepherd와 Geoffrey. Y는 기록의 가치 활용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업무진행과 참고정보를 제공하는 업무활용성, 기록의 생산자가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에 대한 감사기관이나 정책결정의 근거로 대내외 설명책임의무 지원과 마지막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인 기록이 담고 있는 데이터와 정보는 각종 연구와 교육, 창작활동과 역사기술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제공하며 기록은 집단적 기억의 표상이며,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선물임을 강조한 바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또한 셀렌버그가 주장한 기록의 가치 중 2차 가치인 '증거 가치' 측면에서도 해외파병 관련 기관들의 활동내역을 증빙하고, 후대에 기관의 역사를 밝힘과 동시에 파병장병들의 군사·외교적 문화활동으로서 한국군 해외파병의 의미를 기억시키고 재조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군의 해외파병 관련 기록은 분석과 융합을 통해 당대 사건

들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 좀 더 의미있는 기록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풍부함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반응처럼 파병을 추진하는 정부기관과의 논란에 있었던 쟁점부분의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극소수(비공개)기록으로 파병에 대한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공공기록의 프레임 위주의 기록으로는 완전한 파병기록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해외파병 기록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파병업무 훈령 및 기록관리 규정에 대한 명문화된 기록물 관리방안을 정립해야만 할 것이다. 파병단계별로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들에 대해 명확한 기록관리 임무를 정의하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기록들이 반드시 생산되어야만 하는지와 기록의 생산절차 및 유형 등을 명문화해야만 할 것이며, 주기적인 실태 점검활동도 실시해야만 한다. 또한 파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반드시 편제에 반영하고, 해당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병 전 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파병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기록물 이관 및 보존을 명문화된 절차와 통제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특정 파병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들 간의 맥락과 그 소재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기록관리기관에서는 기록의 이관과 병행하여 기록가이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파병업무를 주관하는 기관들 간에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파병의 성격에 따라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기록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활용성을 보장하면서 당대의 파병활동상에 대한 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기록가이드 작성에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 또한 수집된 기록들은 기관별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일원화된 체계에 의해 다양한 기록물 소장 기관을 연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기록들은 하나의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검색하여 확인하는 간접적인 컬렉션화 시스템의 제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파병기록에 대한 기록화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의 수립이 필요하다. Samuels (1986)는 “기록을 수동적 수집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보다 유용한 역사적 기록을 생산하는데 혁신적, 주도적 및 협력적 접근방식인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오정희, 2015).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록학용어사전』에서는 특정한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 기록관, 기록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평가·선별 방법론³⁰⁾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큐멘테이션은 개인이나 조직, 사회활동, 사건 등의 전모와 변화를 재현하거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록을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기록화 전략이란 선별된 하나의 주제 또는 기능에 따라 여러 기관이 해당 주제의 기록을 수집하는 전략이며, 해외파병 기록에 대해

서도 적극적이고 다면화된 기록수집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만 한다. 공적인 프레임에 국한된 기록화에서 벗어나 신문기사, 저널, 다큐멘터리, 웹사이트 등의 이면적인 부분과 쟁점을 다룬 각종 민간영역까지도 포괄하는 기록화를 통해 기록이 생산된 당시의 사회적 이슈와 시민사회 입장 등도 반영할 수 있는 기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할 것이다.

또한 기록 속에 수록되지 못한 사건에 대한 맥락 및 인과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구술 기록의 적극적인 생산도 기록화전략의 틀 속에서 계획되고 진행되어야만 하며, 기록의 풍부함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일상 아카이브 측면에서의 기록화도 고려해야만 한다. 광건홍(2003)은 “기록을 통해 사회를 표상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보다 많은 원형으로서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당대의 사회적 기억을 해석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와 사회적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세에 전승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적 책무 가운데 하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파병 장병들의 다양한 경험적 기억들에 대한 기록화 과정은 공적인 프레임에 국한된 기록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활동들에 대

30) 일반적인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방법론적 특징은 ① 특정영역에 대한 기록수집: 특정지역, 주제를 기록으로 설명, 그 역사와 변화를 재구성하기 위한 기록을 수집하는 전략(개별 기관 중심 기록화의 협소함을 보완, 사회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수집하기 위함). ② 협력적 수집: 다수 기관이 기록을 협력적으로 수집하는 전략이다. (복수의 기록관,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이 협력하며, 수집뿐만 아닌 종합목록 및 기술을 생산,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협력할 수 있다.) ③ 기록화 범주와 대상에 대한 사전분석: 기록수집에 앞서 해당 지역이나 주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다. (이때 관련 기관들에 대한 기능분석을 병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록화 계획이 수립됨). ④ 결락된 범주와 대상을 위한 기록생산: 기록화 대상과 수집된 기록을 비교분석, 필요한 기록은 구술 등의 방법을 통해 생산한다. (특히 주류 기억이 아닌 대항 기억을 기록화 하는데 장점 발휘). ⑤ 자문조직의 운영: 기록화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수집된 기록을 평가하기 위해 자문조직(전문가, 기록생산자, 아키비스트, 이용자집단, 활동가 등)을 구성하여 운영한다(설문원, 2012).

한 성과를 재현하고 재조명할 수 있게 해주며 공적기록의 결락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 프레임의 기록화와 함께 민간영역의 기록을 포함한 일상 아카이브 측면에서의 기록화도 기록화전략의 틀 속에 포함시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박건홍 (2003).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경기도: 역사비평사.
-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2012). 해외파병 발전방안.
- 김소영 (2008). 육군 군사사 연구기관의 역사기록 관리방안 - 수집형 역사기록관으로서 위상정립과 역할모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 김정두 (2011). 한국 군사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해외파병부대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전공.
- 박대균 (2006).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 협상 과정 - 미국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74, 144-189.
- 방경종 (2016). 국군 해외파병 정책의 진화론적 접근: 부대단위 파병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공공정책학 전공.
- 안정애 (2004).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파병관련 국내 자료의 종류와 성격. 기록학연구, 9, 234-251.
- 오명진 (2012). 동시대 역사적 사건의 기록화 전략.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 전공.
- 오재환 (2011). 육군 해외파병부대 기록물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 전공.
- 이병록 (2015). 한국의 베트남·이라크전 파병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로즈노 이론.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전공.
- 이상욱 (2016). 한국 해외파병 정책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평가: 로즈노의 예비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전공.
- 장준갑 (2009). 존슨 행정부 초기의 한미관계(1964~66). 역사와 담론, 52, 245-271.
- 정효현 (2003a). 해외파병 부대원의 스트레스 변화에 관한 연구 - 상록수부대 제7진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46(1), 93-126.
- 정효현 (2003b).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군의 파견명분 인식과 스트레스 반응과의 상관성 연구: 동의부대 제3진·다산부대 제1진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3), 99-126.
- 월간 논 편집부 (2007). 시사 속 역사: 한국군의 해외파병 역사와 현황, 13, 196.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경기도: 아세아문화사.

한태근 (2010). 해외파병장병의 전장 및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전공.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Ahn, Jung Ae (2004). The kind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documents related to the ROK's military dispatch to Vietna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9, 234-251.
- Bang, Kyung-Jong (2016). The evolution of the ROK Armed Forces' overseas deployment policy.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t Mokwon University.
- Chang, Jun Kab (2009). Johnson administration's early Korean-American relations: A case study of negotiations for Korean troop dispatches to Vietnam. *History and Discourse*, 52, 245-271.
- Chung, Hyo-hyun (2003a). A study on stress changes of soldiers deployed overseas - Focused on Sangroksu troop's 7th camp.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46(1), 93-126.
- Chung, Hyo-hyun (2003b).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the awareness about the pretext for deployment among soldiers deployed to Afghanistan and their stress response: Focused on Dongeui troop's third camp and Dasan troop's first camp.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7(3), 99-126.
- Han, Tai Keun (2010). Research on field and job stress of soldiers deployed overseas and stress-response.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Kim, Jung Du (2011). A comparative study of determinants of Republic of Korea's military foreign policy: By focusing on the cases of overseas troop deployment.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Diplomacy.
- Kim, So Young (2008). Management system for historical records of the institute of Army history: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s and role as collecting archiv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Gongju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ves Management.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KIPOCENT (2012). The development of overseas deployment.
-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2013).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The science of evidence & memory*. Gyeonggi-do: Asian Culture Press.
- Kwak, Kun Hong (2003). The theory and reality of Korean national record management: No records, no history. Gyeonggi-do: Critical Review of History.
- Lee, Byung-Lock (2015). A study of determinants of ROK's military dispatch to the wars in

- Vietnam and Iraq: Focusing on Rosenau theory.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Diplomacy.
- Lee, Sang-uk (2016). A study of influence estimate of overseas deployment determinants in ROK: Focusing on Rosenau pre-theory.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Diplomacy.
- Monthly Non Editorial Board (2007). History in current issues: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the ROK Armed Forces' overseas deployment, 13, 196.
- Oh, Jae-hwan (2011). A study on the use of records and archives of overseas dispatched armed forces in the ROK Arm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 Oh, Myung-Jin (2012).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contemporary historical event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 Management.
- Park, Tae-Gyun (2006). Korea and the U.S. Critical Review of History, 74, 144-189.

